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

주체113(2024)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66호로 채택

제 1 장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의 기본

제 1 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법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 회의 대의원 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그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 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의 지위와 임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주권기 관의 성원이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지방 주권기 관의 성원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제 3 조 (대의원의 활동원칙)

대의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

제 4 조 (대의원의 역할제고원칙)

대의원은 주권활동과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한다.

제 5 조 (대의원의 규률준수원칙)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지시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며 대의원사업과 활동에서 정해진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지 키도록 한다.

제 6 조 (대의원활동의 보장원칙)

국가는 대의원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7 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도, 시,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우대 및 책임 관계를 규제한다.

이 법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질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각급 인민회의기간 대의원의 사업

제 8 조 (대의원의 사업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각급 인민회의에서 당정책에 입각하여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과 문제들을 제안하는 것은 대의원의 참된 자세이고 태도이다.

대의원은 국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9 조 (문건초안에 대한 사전연구와 의견제기)

대의원은 인민회의에서 토의할 문건초안을 배포받으면 자기 지역, 자기 단위 전문일군과 종업원, 선거구지역 인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깊이 연구하고 정해진 기일안에 해당 의견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0조 (대의원등록)

대의원은 인민회의가 시작되기 1~2일전에 진행하는 대의원등록에 참가하여야 한다.

인민회의에 참가하지 못할 사유가 제기되는 경우 사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인민회의에서의 권리행사)

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한다.

제 12조 (법의 제정 및 수정보충, 집행과 관련한 의견제기)

대의원은 인민회의에서 법제정 및 수정보충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법집행 및 검열감독정형을 청취하고 해당 대책을 세울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 13조 (국가기관들의 활동과 관련한 의견제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의 사업정형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인

민위원회의 사업정형을 청취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 1 4 조 (예산집행정형과 관련한 의견제기)

대의원은 인민회의에서 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 1 5 조 (의견제기 방법)

대의원은 인민회의에서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 의정과 관련한 토론과정에 또는 자기 좌석에서 직접 제기하거나 서기석에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으며 연구 및 협의회 같은 계기에도 제기할수 있다.

제 1 6 조 (의안가결)

대의원은 인민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심의승인하는 가결에 참가한다. 이 경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대의원증을 들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 1 7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방청참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토의에 방청으로 참가할수 있다.

제 1 8 조 (의견서, 건의서의 제출)

대의원은 국가관리와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반영한 의견서나 건의서를 인민회의에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해결방도가 반영된 구체적이며 분석적인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각급 인민회의 휴회기간 대의원의 활동

제 1 9 조 (각급 인민회의 휴회기간 대의원의 임무)

각급 인민회의의 휴회기간 대의원은 직책상임무와 함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대의원은 군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령과 결정, 지시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며 선거구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하여야 한다.

제 2 0 조 (대의원의 의안제출)

대의원은 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의안에는 토의할 내용과 제기근거 같은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의안을 제출한 대의원에게 처리 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21조 (림시회의소집의 제기)

대의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민회의 름시회의소집을 제기할수 있다.

제 22 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료해)

대의원은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과 경제사업, 사회생활, 인민생활 에서 제기되는 문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 같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직접 료해할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도인민회의 대의원은 해 당 도경내 에서, 시, 군인민회의 대 의원은 해 당 시, 군경내에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문제 들을 료해할수 있다.

제 23조 (대의원의 의 견제 기)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적극 제 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과 관련한 의견
2. 국가기관들의 사업개선과 관련한 의견
3.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관련한 의견
4. 사회생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
5.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
6. 그밖에 대의원의 활동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제 24조 (법준수집행과 관련한 대의원의 권리행사)

대의원은 법준수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법집행과 관련한 의견을 해당 인민위원회와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에 제기 할수 있다.
2. 법위반현상과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기관

에 알려주어 대책을 세우게 할수 있다.

3.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과 규정, 해당 인민 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제 2 5 조 (대의원의 의견에 대한 대책과 회보)

각급 인민위원회와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의원의 의견을 심중히 접수하고 1~3개월안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대의원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의원의 의견을 외면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대책정형을 회보하지 않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6 조 (선거자들에 대한 인사표시)

새 임기 대의원으로 선거받았거나 보선된 대의원은 선거받은 선거구에 나가 선거자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을 당과 국가의 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 2 7 조 (선거 자들과의 사업)

성, 중앙기관에서 사업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년 2차, 지방에서 사업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분기 1차,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은 정상적으로 선거구에 나가 선거자들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 2 8 조 (준법교양과 자각적인 법준수)

대의원은 주민, 종업원들이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준법교양을 정상적으로 진행 하며 누구보다 법준수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적행 위와의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제 2 9 조 (신소청원의 처리)

대의원은 선거 자들로부터 제기받은 신소청원을 책임적으로 처리 해주어야 한다.

직접 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0 조 (고상한 도덕품성의 소유)

대의원은 언제나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인민을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사업과 생활을 검박하고 청렴결백하게 하는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 31조 (대의원활동정형에 대한 보고)

대의원은 선거구에 나가 진행한 사업정형을 비롯하여 휴회기간의 활동정형을 분기 1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변동, 상벌관계, 해외출장, 입원치료 같은 제기되는 문제들도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해당 인민위원회는 대의원의 활동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의원활동의 보장

제 32조 (대의원에 대한 존중과 협력)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의원을 존중하고 대의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의원활동을 방해하거나 대의원을 하대, 위협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3조 (불가침권의 보장)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은 범위반행위를 한 대의원을 취급처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과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법시행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 34조 (대의원증과 대의원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게 대의원증과 대의원휘장을,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수여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증을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휘장을 최고인민회의나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에 따라 대외사업을 할 때 달며 기층단위에서 사업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일상적으로 달아야 한다.

제 35조 (정치의식제고를 위한 사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대의원들이 당정 책과 해당 분야의 실무지식

을 원만히 체득하고 높은 정치의식을 지니도록 강습, 참관, 답사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 36조 (해당 지역, 단위의 출입)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증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다니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다.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증을 가지고 해당 도경내에서 다니며 도인민회의의 대의원인 경우 해당 도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시,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인 경우 해당 시, 군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다.

대의원의 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는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법시행규정에서 정한데 따른다.

제 37조 (무임승차)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비행기와 열차, 버스, 배 같은 려객운수수단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도경내에서 열차와 버스, 배 같은 려객운수수단을 무임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 38조 (대의원사업 비보장)

대의원은 도서구입과 활동에 필요한 대의원사업비를 보장받는다.

재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의원사업비를 매월 정해진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39조 (자료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의원이 대의원활동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40조 (활동시간보장과 생활비 지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의원이 인민회의의 휴회 기간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며 이 기간에도 자기 직무에 해당하는 직제생활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41조 (우대 보장)

내각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수매량정지도기관, 출판물 보급기관, 지

방인민위원회, 상업 및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판물보급, 호텔, 려관, 병원, 료양 소의 리용, 상업 및 편의봉사에서 대의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2 조 (장례보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인민의 대표,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는 기관장으로 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준다.

제 5 장 대의원의 책임

제 4 3조 (대의원사업과 활동에 대한 책임)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일상적인 감독을 받으며 자기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최고인민회의,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휴회 기 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 원회 , 해 당 인민위 원회 앞 에 책 임 진다.

제 44조 (대의원의 직권람용금지)

대의원은 개 인적 리익을 추구하면서 주권 및 행정적집행 기관, 법 기관의 활동에 간섭하는것 과 같은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비법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5 조 (대 의 원증과 대 의 원휘 장의 보관)

대의원은 대의원증과 대의원휘장이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정히 다루고 보관 하여야 한다.

대의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제 4 6조 (대의원에 대한 신소청원의 처리)

대의원에 대한 신소청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가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해당 인민위원회는 대의원에 대한 신소청원을 객관적으로 공명 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 7 조 (대 의 원의 사표제 기)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의 신임을 잃은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

회, 해당 인민위원회에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한다.

제48조 (규률위 반행위에 대한 처벌)

대의원사업 및 활동과정에 규률을 위반한 대의원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6개월간의 대의원대우정지처벌 또는 대의원 자격정지처벌을 적용 한다.

대의원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법시행규정에서 정한데 따른다.

제 49 조 (대 의 원소환)

다음의 경우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환한다.

1. 강직, 해임, 철직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규률위반행위로 당과 국가사업에 엄중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
3. 대 의 원사표제 기 가 승인되었을 경우
4.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거나 처신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의 신임을 잃었을 경우
5. 년로보장, 사회보장을 받은 경우
6. 직 무조동되어 대 의 원으로서 의 임 무를 수행 할수 없을 경 우

제 6 장부 칙

제 50 조 (시 행 일)

이 법은 주체11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